

의안번호	2207716
의 퇴 인	엄태영의원
회 답 일	2025.3.25
추 계 번호	25B0461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5년 단위의 은퇴자마을(도시) 구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5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3억 500만원(연평균 6,1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은퇴자마을(도시) 구성에 관한 기본 계획(안 제4조)	305	-	-	-	-	305	61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은퇴자마을(도시) 본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제4조에 따른 은퇴자마을(도시) 구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제1항)	의무규정
		은퇴자마을(도시)본부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4조 (은퇴자마을(도시) 구성에 관한 기본 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5년 단위의 은퇴자마을(도시) 구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함.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음(제1항)	의무규정
		은퇴자마을(도시) 구성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은퇴자마을(도시) 정책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은퇴자마을(도시)의 수요에 관한 사항 3. 은퇴자마을(도시)의 공급정책에 관한 사항 4. 은퇴자마을(도시)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5. 은퇴자마을(도시)의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은퇴자마을(도시)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은퇴자마을(도시)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안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 대책)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 ¹⁾ 를 준용함.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로, “주택지구”는 “은퇴자마을(도시)지구”로 봄	의무규정
5	안 제13조 (지구계획 승인 신 청 등)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은퇴자마을(도시)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은퇴자마을(도시)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신청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4조 (지구계획 승인 등)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7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항 ²⁾ 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함(제3항)	의무규정
8	안 제16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철도·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지원 대상·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8조 (토지등의 수용 등)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은퇴자마을(도시)지구의 조성 또는 은퇴자마을(도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제6항)	의무규정
10	안 제22조 (부담금의 감면)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1항)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8.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재량규정
11	안 제27조 (은퇴자마을(도시) 주택의 공급)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2	안 제31조 (자료요청)	제1항 ³⁾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함(제3항)	의무규정
13	안 제32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44조에 따라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38조 (은퇴자마을(도시) 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는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제1항) 1.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입주자가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 2. 제37조에 따른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3.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40조 (은퇴자마을(도시) 주택의 관리)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입주자가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41조 (보건의료시설 등 설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종합병원의 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이하 “문화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7	안 제42조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항~제2항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항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6항~제9항 생략)

2) 안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4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안 제31조(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 또는 제38조에 따른 은퇴자마을(도시)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장애인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 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추계현황
1	안 제3조(은퇴자마을(도시)본부)	×	- (미첨부3호) 은퇴자마을(도시) 지정 및 사업 계획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게 될 은퇴자마을(도시)본부의 구성 및 인력 규모를 특정하기 곤란함
2	안 제4조(은퇴자마을(도시) 구성에 관한 기본계획)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3	안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의무 이행을 위한 선언적 조항
4	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 대책)	×	- (미첨부3호) 은퇴자마을(도시) 사업자의 수, 사업시행 시기, 지역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지구 계획 수립 대상 도시 수, 계획 수립 시기, 부동산 투기 대책 및 주택공급 계획 등을 현시점에 특정하기 곤란함
5	안 제13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안 제14조(지구계획 승인 등)· 안 제27조(은퇴자마을(도시) 주택의 공급)		
6	안 제16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7	안 제18조(토지등의 수용 등)	×	- (미첨부3호) 은퇴자마을(도시)에 설치하게될 간선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범위, 토지등의 수용 규모와 보상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자료 및 정보의 수집, 관리 방법, 은퇴자 마을(도시) 실태 조사를 위한 대상, 보건의료시설 건축 및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방안, 문화시설등의 설치 지원 계획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8	안 제3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9	안 제38조(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10	안 제40조(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관리)		
11	안 제41조(보건의료시설 설치 지원)		
12	안 제42조(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13	안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안 제22조(부담금의 감면)· 안 제31조(자료요청)	×	- (미첨부3호) 은퇴자마을(도시)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감면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지 입지, 부과대상 면적, 해당 토지별 개발이익 등에 관한 정보와 동법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별 부과 사용료, 수수료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에 관한 정보가

연 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추계현황
			필요하나 현시점에 이에 대한 사항들이 불확 정적이어서 세외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 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5년 단위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산
 - 제정안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은퇴자마을(도시) 정책의 목적 및 기본방향, 은퇴자마을(도시)의 수요에 관한 사항, 공급정책에 관한 사항, 은퇴자마을(도시)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은퇴자마을(도시)의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은퇴자마을(도시)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은퇴자마을(도시)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마을 조성관련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사업비를 참고할 경우, 평균 3억 5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표 2] 유사사례 관련 계획 수립비용

(단위: 백만원)

사업년도	사업명	공고기관	사업비
2023	농촌관광스타마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전라북도 고창군	400
2023	화순군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221
2022	성주군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경상북도 성주군	247
2018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경상북도	350
평균			305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 본 추계에서는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는 추계기간 동안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3억 500만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함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5년 단위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계획 수립비용	305	-	-	-	-	305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값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제정안 중 추계하지 않은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따라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은퇴자마을 조성 사례 및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1. 은퇴자 마을 조성 사례

경상북도 하회과학자마을 설명 자료

□ 추진배경

- 은퇴 학자들이 보유한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발전적 승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하회과학자마을 조성 프로젝트
- 사 업 비: 500억원 정도
 - * 건축: 400, 은퇴과학자 프로그램 100억원
- 위 치: 경북도청신도시
- 주요사업: 경상북도 도정 정책활용(석좌연구원 등), 정주여건 조성 등



[하회과학자마을 조감도]

□ 주요사업

- (하회 사이언스 프로그램) 경북연구원의 석좌 연구원(임기 2년)으로 임명, 프로젝트 수행 연구비 지원(4천만원 정도/1년)
- (정착자문) 경북도 및 23개 시군 정책 자문, 국책과제 기획 및 대응, 정부 공모사업 참여, 기업과 대학 연계 연구 프로젝트 추진
- (주거제공) 27,789㎡부지, 50호(20~30평형) 은퇴 과학자 전용 주거
 - * 경북도청 신도시 내, 호민지 북측 특화주거용지, 임기 내 무상제공(일부 실비)

□ 향후계획

- '23. 7월: 하회과학자마을 참여 희망자 간담회 개최
- '24. 4월: 하회과학자마을 건축공사 착공
- '24. 하반기: 하회과학자마을 참여 희망자 접수·선발
- '25. 상반기: 하회과학자마을 입주

2. 고령자 주택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개념)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1~2천㎡)을 복합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

* (순위) 수급자→평균소득 70%이하 국가유공자 등→평균소득 50%이하→중위소득 150%이하



- (재정지원) 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건설비 38.2억원 지원**

* 통합공공임대 : 건설단가 9,939천원/3.3㎡('24년 기준)의 최대 80%(출자39% 융자41%)

** 연차별 지원비율 : 사업승인(20%) - 사업승인+1년(25%) - 착공(25%) - 준공(30%)

□ 사업추진 연혁 및 현황

- (연혁) 기축 영구임대 단지에 별동을 증축하는 주거복지동 주택('11~'16), 공공실버주택('16~'17)을 거쳐 고령자복지주택('19~) 추진 중
- (현황) '23년 하반기 기준 총 78곳 8,098호 선정